

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(제4조제4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	
		1차	2차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7조 제4항 제1호	등록취소	
나.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	법 제7조 제4항 제2호	등록취소	
다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7조 제4항 제3호	등록취소	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	법 제7조 제4	영업정지	등록취소

피·지연하는 경우 마.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	항 제 4호 법 제 7조 제 4항 제 4호	6월 등록취소	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 7조 제 4항 제 5호	영업정지 6월	등록취소
사.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	법 제 7조 제 4항 제 6호	등록취소	